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시스젠
- 제품(물품)명 : (주)티맥스소프트 JEUS Enterprise8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83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27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시스젠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제니퍼소프트
- 제품(물품)명 : (주)제니퍼소프트 Jennifer 5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95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2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제니퍼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사이냅소프트
- 제품(물품)명 : (주)사이냅소프트 Synap Document Viewer 2022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709,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 월 22 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사이냅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위안소프트
- 제품(물품)명 : 위안미디어 STD v2.5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14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9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위안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스코인포
- 제품(물품)명 : (주)스코인포 RFC3.0 for ESF4.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618,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 월 22 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스코인포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채울
- 제품(물품)명 : (주)채울 UTM Policy 150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699,000(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 월 22 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채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아이티스테이션
- 제품(물품)명 : (주)아이티스테이션 TA-PRS, TA-FDM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97,77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 월 1 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아이티스테이션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AXGATE
- 제품(물품)명 : AXGATE 1300, AXGATE 1300S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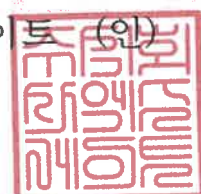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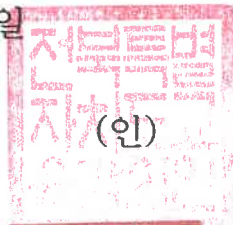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067,000(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22 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엑스게이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와치텍
- 제품(물품)명 : (주)와치텍 와치올 애플망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9,425,000(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2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와치텍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유지보수 사업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위즈코리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7,202,000원 (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8월 14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위즈코리아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소만사
- 제품(물품)명 : (주)소만사 Privacy-i 6.0 Server/Agent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5,343,000(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2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소만사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에어큐브
- 제품(물품)명 : (주)에어큐브 AirFRONT G3K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7,668,000(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22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에어큐브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노아시스템즈
- 제품(물품)명 : 노아시스템즈 티브리지 T50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6,170,000(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2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노아시스템즈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 안랩
- 제품(물품)명 : AhnLab TG500C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98,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9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쓰리에스소프트
- 제품(물품)명 : (주)쓰리에스소프트 NEPYX NetDesktop / Enterprise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7,85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2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쓰리에스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휴네시온
- 제품(물품)명 : (주)휴네시온 I-oneNet v5.0, i-oneNGS v2.0(매니저, 라이선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9,9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12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휴네시온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AXGATE
- 제품(물품)명 : AXGATE SSL V2.1(AXGATE 2300M)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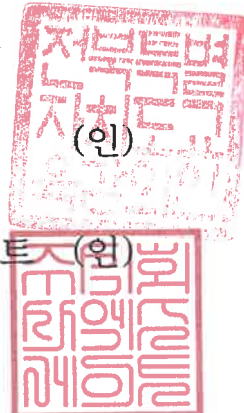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462,000(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22 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엑스게이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시스젠
- 제품(물품)명 : Veritas NetBackup 10.0 / Flex 526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28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09월 22일

발주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시스젠 (인)